

『純宗大王實錄儀軌』 謄錄 官文書의 研究*

A Study on the Official Documents Registered in
Sunjongdaewang Sillok Uigwe(『純宗大王實錄儀軌』)

김 상 호 (Kim, Sang-Ho)**

◁ 목 차 ▷

1. 緒言	3.2 來關
2. 官文書의 유형과 왕래기관	4. 廳房 및 別工作의 문건
2.1 官文書의 유형	4.1 各廳의 甘結
2.2 中央 및 地方官衙	4.2 各房의 甘結 및 稟目
2.3 契와 塵	4.3 別工作의 手本과 牒報
3. 本廳의 문건	5. 結語
3.1 移文	<참고문헌>

< 초 록 >

본 연구는 의궤의 등록류로서의 성격과 특징을 밝히기 위해 『순종대왕실록의궤』에 수록된 관문서를 분석한 것이다. 391건의 문서가 등록되어 있는데, 내관 9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발급문서이다. 대상관아는 60곳으로 연건수는 648건이며, 그 중 호조가 108건으로 가장 많다. 관문서를 수취한 계와 전은 모두 19곳이며, 기관별 연건수는 64건이다. 감결은 교수청의 문건이 많고, 각방의 경우에는 대부분 내용이 중복된다. 『철종대왕실록청의궤』와 비교하면 관아의 경우에 그 건별 순위에서 차이가 거의 없고, 계와 전의 경우에는 순위에서 차이가 많다. 문건의 일자가 누락되고, 별공작의 문건에 그 처분내용을 기입한 사실이 중요한 다른 점이다.

要語: 순조, 의궤, 관문서, 등록

* 이 논문은 2011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anghkim@daegu.ac.kr)

접수일: 2011년 12월 9일 최초심사일: 2011년 12월 12일 심사완료일: 2011년 12월 23일

<ABSTRACT>

This purpose of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Uigwe(儀軌) as a good registry of official documents. The total number of official documents contained in *Sunjongdaewang Sillokcheong Uigwe*(『純宗大王實錄廳儀軌』) are 391, and they consist of about a half of a whole volume. 60 government offices are related with these documents, and the largest group of 108 documents are related with the Ministry of Finance. When compared to *Cheoljongdaewang Sillokcheong Uigwe*(『哲宗大王實錄廳儀軌』),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ank of government offices in terms of the related documents, but some differences in the cases of Gye and Jeon, the lower offices. Major differences include the omission of dates on documents, and the record of entries on the documents of Byeolgongjak.

Key words: Sunjo, Uigwe, official documents, register

1. 緒 言

「純宗大王實錄儀軌」(이하 純祖實錄儀軌로 칭함)는 조선 제 23대왕 純祖의 재위 34년간의 역사를 담은 純祖實錄의 편찬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1835년 5월 10일에 實錄廳의 摠裁官 이하 여러 堂郎을 임명하고, 다음달 6월 19일 校書館에 設廳한 이래 1838년 윤4월 28일 洗草하기까지 3년의 편찬과정을 왕래문서를 중심으로 엮어 놓았다. 전체 110장 분량 가운데 啓辭를 제외한 관문서가 108면에 달할 정도로 그 비중이 높다.

편찬일정을 살펴보면, 刪節은 設廳 한 달 뒤인 윤6월 25일에 시역하여 석 달 정도 지난 9월 20일에 마쳤고, 纂修는 이어 11월 10일에 시역하여 이듬해 1836년 7월 8일에 마쳤으며, 校正은 그 며칠 후 7월 21일에 시역하여 두 해 지나 1838년 윤4월 10일에 마쳤다. 그리고 校讐와 刊印은 校正의 마무리 시점인 3월 8일, 3월 20일에 각각 시역하여 두 달 후 윤4월 10일에 校正과 함께 마친 것으로 해당 의궤 목록에 기입되어 있다. 이어 윤4월 18일에 封裹하고, 21일에 奉安하였으며, 28일 최종적으로 洗草한 것으로 나타난다. 재위 기간만큼 실록편찬에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실제 그 대부분이 校正의 과정에 소요되었음을 알 수 있겠다.

선행연구에 해당하는 「哲宗大王實錄廳儀軌」(이하 哲宗實錄儀軌로 칭함)의 고찰¹⁾에 이어 純祖實錄儀軌의 등록 관문서를 다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비교연구가 가능한 때문이다. 참고로 憲宗實錄儀軌는 哲宗實錄儀軌와 기록형식에서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純祖實錄儀軌에 등록된 관문서의 유형과 왕래기관, 本廳 및 廳房別 문건의 성격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哲宗實錄儀軌와의 차이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아울러 검토하고자 한다.

1) 김상호, “「哲宗大王實錄廳儀軌」의 謄錄 官文書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49집(2011. 9), 335-357.

2. 官文書의 유형과 왕래기관

2.1 官文書의 유형

純祖實錄儀軌에 등록된 관문서는 實錄廳의 本廳과 刪節廳, 纂修廳, 校正廳, 校讐廳, 一房, 二房, 三房, 別工作, 그리고 儀軌廳을 중심으로 왕래된 것들이다. 그 유형별 건수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廳房別 관문서의 유형

구 분		발 급				수취 관	계
		이문	감결	첩보	소계		
실록청	본청	30			30	9	30
	산절청		52		52		52
	찬수청		31		31		31
	교정청		96		96		96
	교수청		67		67		67
	일방		16		16		16
	이방		15		15		15
	삼방		15		15		15
	별공작			39	39		39
소계	30	292	39	361	9	370	
의계청			21		21		21
계		30	313	39	382	9	391

* 감결과 첩보는 각각 3건의 품목 및 수본 포함.

위 표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발급문서는 移文, 甘結(稟目 포함), 牒報(手本 포함) 등 382건이며, 수취문서는 關에 한정해 9건이다. 발급문서에 비해 수취문서의 양이 절대적으로 적은 것은 哲宗實錄儀軌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예이다.²⁾ 이는 당시 의계를 작성함에 있어서 왕래문서를 모두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발급문서로 제한하되, 단지 초기의 關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2) 哲宗實錄儀軌에 등록된 수취문서 關은 8건이다.

수용한 때문으로 해석된다.

모두 391건에 달하는 등록문서는 哲宗實錄儀軌의 193건에 비하면 양적으로 배 이상 많은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에도 수취문서를 비롯해 儀軌廳의 문건, 그리고 移文의 건수는 哲宗實錄儀軌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큰 차이는 各房의 甘結과 別工作의 牒報에서 있다. 각기 2배, 또는 4배가 많다. 특히 甘結은 各房에서의 차이는 크지 않고, 各廳에서의 차이가 크다. 참고로 哲宗實錄儀軌의 경우, 甘結이 98건임에 비해 純祖實錄儀軌는 246건에 달한다.

결국 전체 문건에서 甘結이 차지하는 비중은 哲宗實錄儀軌에서 발급문서의 3/4 정도였으나 純祖實錄儀軌에서는 4/5 정도로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중요한 사안들이 더 많았다기보다는 더 오랜 기간 일이 진행되면서 각사에 내려진 사소한 일들의 요구가 각각의 문건으로 작성된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는 관문서의 전체 건수와 관아별 연건수의 비교를 통해서도 짐작되는 바이다.

2.2 中央 및 地方官衙

모두 391건의 등록문서에 그 이름이 기입된 중앙 및 지방의 관아는 모두 60곳이다. 그 중 2회 이상 왕래건수가 있는 관아는 38곳인데, 이를 건수가 많은 순서로 열거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官衙別 왕래건수

관아	건수	관아	건수	관아	건수
戶曹	108	瓦署	17	奎章閣	3
長興庫	57	司宰監	12	宣惠廳	3
繕工監	53	平市署	9	右捕廳	3
工曹	52	校書館	8	全羅監營	3
禮賓寺	44	衛將所	7	典設司	3
義盈庫	37	訓練都監	7	左捕廳	3
濟用監	29	司藥寺	6	豐儲倉	3
兵曹	26	司僕寺	6	三營門	2
司瞻寺	24	慶尙監營	4	承政院	2

관아	건수	관아	건수	관아	건수
別工作	21	禁衛營	4	造紙署	2
軍器寺	18	御營廳	4	忠淸監營	2
廣興倉	17	禮曹	4	摠戎廳	2
軍資監	17	漢城府	4	계	626

위 표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관아별로 왕래건수가 가장 많은 관아는 戶曹이며, 타 관아에 비해 월등히 많은 108건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이 長興庫, 繕工監, 工曹의 순인데, 이는 哲宗實錄儀軌에서의 예와 동일하다. 다만 다음 순위인 禮賓寺, 義盈庫, 濟用監, 兵曹, 司瞻寺, 別工作 등에서 약간의 차이가 보일 뿐이다.³⁾

관아 중에 단지 1건만의 문건이 왕래한 것으로 드러나는 관아는 모두 22곳이다. 그 중에는 議政府, 備邊司, 刑曹, 司憲府, 司諫院, 成均館, 左巡廳, 右巡廳, 典獄署, 惠民署, 圖書署 등 중앙관아와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등의 지방 監營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의궤에 등록된 문건 중에는 대상관아를 각사나 各該司, 각사각계로 기입된 문건도 17건이 포함되어 있는바 관아별 연건수는 최소 7백건이 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문서의 내용은 일일이 검토하지 않더라도 상위 4개 관아에 해당하는 문건이 270건이고, 상위 10개 관아를 치면 503건에 달하기 때문에 해당 관아의 성격상 물자의 공급과 제작, 인원의 동원과 관련한 문서들이었음은 쉽게 짐작된다. 다만 哲宗實錄儀軌와의 차이를 살펴보면, 인원의 동원과 관련해 문건의 수가 적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예를 들어 哲宗實錄儀軌에서 兵曹가 5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衛將所 13위, 禁衛營 19위, 御營廳 27위 등으로 나타나는데, 純祖實錄儀軌에서는 兵曹가 8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밖에 衛將所 18위, 禁衛營 23위, 御營廳 24위로 그 순위나 문건의 전체 양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여유 있게 실록의 편찬이 이루어지면서 야간통행과 같은 일로 문건을 발급할 일이 적었을 수도 있겠다.

3) 哲宗實錄儀軌의 등록문서에 기입된 관아는 모두 61곳이며, 長興庫, 繕工監, 工曹 다음으로 司籙寺, 校書館, 軍器寺, 禁衛營의 순서이다.

2.3 契와 塵

관아에서 조달하는 것이 아니거나 시급히 사용해야 할 물건은契와 塵에서 직접 공급을 받았다. 純祖實錄儀軌에서 관련 문건이 발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기관은 다음 <표 3>과 같이 모두 19곳이다.

<표 3> 契塵別 왕래건수

기관	건수	기관	건수	기관	건수	기관	건수
唐沙器契	27	楸板契	2	芎末契	1	車契	1
常沙器契	6	自作板契	2	毛狗皮契	1	彩色契	1
炭契	5	立塵	2	索契	1	草物塵	1
眞絲契	4	紙塵	2	鴨頭契	1	黃楊木契	1
其人	3	筆契	2	柳筍契	1	계	64

* 眞絲契는 眞絲塵 1건을 포함.

위 표에서와 같이 많은 문건이 내려간 곳은 唐沙器契가 27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常沙器契, 炭契, 眞絲契, 其人 등의 순서이다. 다섯 곳의 합이 45건으로 전체 64건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는 哲宗實錄儀軌와 비교하면 왕래 기관의 수나 문건의 수가 오히려 적은 편이다.⁴⁾ 중앙 및 지방관아와는 사뭇 다른 결과이다. 이는 기간에 여유가 있어서契와 塵에 대한 물자의존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기관별로는 唐沙器契가 27건으로 절대적으로 많다. 哲宗實錄儀軌에서는 鴨島契가 14건으로 1순위였고, 唐沙器契는 10건으로 3순위였는데 반해 純祖實錄儀軌에서는 鴨島契가 단지 1건에 불과한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같은 성격의 일을 진행한 까닭에 물자의 수요는 같았을 것임을 고려하면 물자의 공급처가 달랐다고 볼 수밖에 없다.

4) 哲宗實錄儀軌에서 이름이 보이는契와 塵은 모두 27곳이며, 문건의 연건수는 88건이다.

3. 本廳의 문건

3.1 移文

實錄廳 本廳에서 발급한 移文은 모두 30건이 등록되어 있다. 1835년 윤6월부터 시작하여 1838년 윤4월까지 3년에 걸쳐 작성된 것들이다. 그 간략한 내용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本廳의 移文목록

순서	일자	기관	내 용
1	을미 윤6/	兵曹	政院待令書吏, 軍士 등 대령하고, 雇價는 전례에 따라 逐朔 지급할 것
2	윤6/	戶曹	摠裁官房 제 처소에 鋪陳 전례에 따라 마련할 것
3	윤6/	戶曹	堂上 등 鋪陳 수송할 것
4	윤6/	戶曹	都廳 등 진배 각양물종을各司는 구별하여 各色이 本曹에 보고하고 會減하여 늦지 않게 할 것
5	7/	戶曹	分差計士 등 點心米 8개월 치 지급할 것
6	7/	戶曹	茶母 정송할 것
7	8/	戶曹	毛狗皮方席 우선 15坐 물력 지급할 것
8	병신 2/	戶曹	分差計士 등 點心米 8개월치 지급할 것
9	2/	戶曹	毛狗皮方席 15立 더 만들어 보낼 것
10	6/	平安監營 咸鏡監營 全羅監營 黃海監營	관찰사가 엮은 時政記를 상송할 것
11	7/	慶尙監營 全羅監營 忠淸監營	인출에 들어갈 楮注紙를 정하니 10월 말까지 올릴 것(경상도 250권, 전라도 200권, 충청도 150권)
12	10/	嶺營	楮注紙를 타도는 監營이 납부하는데, 본도만 각 읍이 납부하면 환송할 것임
13	정유 3/	戶曹	分差計士 등 點心米 3월부터 8개월 치 마련하여 지급할 것
14	9/	戶曹 兵曹	校正割付 시 唱準 10인 料布 9월 29일까지의 것 마련하여 지급할 것
15	9/	戶曹	實錄印役 시 소용 물품 부족하니 마련할 것

순서	일자	기관	내 용
16	10/	戶曹 兵曹	鑄字類聚 시 守藏 등 赴役 名數 후록하니 料布 마련해 지급할 것
17	11/	戶曹	毛狗皮方席 20호에 들어갈 것 마련해 지급할 것
18	11/	戶曹 兵曹	校正 시 唱準 등 赴役 名數 후록하니 料布 마련해 지급할 것
19	12/	戶曹 兵曹	鑄字 刻出 시 刻手 등 付役 日子 후록하니 料布 마련해 지급할 것
20	무술 3/	戶曹 兵曹	印出 시 工匠 등 料布 마련하여 지급하게 米 50石, 錢 500兩 우선 수납할 것
21	3/	戶曹 兵曹	分差計士 등 點心米 3월부터 윤4월 것까지 마련해 지급할 것
22	4/	戶曹 兵曹	米 50石, 錢 500兩 다 지급하고 없으니, 米 40石, 錢 500兩 다시 수송할 것
23	4/	戶曹 兵曹	印役을 마쳤는데 員役 등 한 달 料布 마련해 지급할 것
24	4/	兵曹	印役 시 工匠 雇價 錢 1,000兩 수송했는데, 지급액이 1,126兩 8錢 6分이니 부족액 수송할 것
25	윤4/	戶曹	料米 지급 후 赴役 名數 후록하니 회감할 것
26	윤4/	兵曹	待令 書吏 등 雇價 마련해 지급할 것
27	윤4/	戶曹	洗草 시 員役 등 供饋 수요를 지급할 것
28	윤4/	兵曹 三營門	洗草 시 員役 등 供饋 수요를 지급할 것
29	윤4/	戶曹	正本紙 인출 나머지 170卷 이송하니 상고할 것
30	윤4/	戶曹 兵曹	題名錄 수정하여 分送하게 각 60兩씩 수송할 것

위의 목록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각 문건은 그 일자가 빠진 채 등록되어 있다. 이는 各房의 稟目を 제외한 모든 문건에서 마찬가지이다. 일자의 의미를 중요시하지 않은 이유도 있겠고, 당초 문건에서 일자가 누락되어 상고하기 어려운 이유도 있을 수 있다. 어찌되었든 기록의 정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다.

문건의 주요 내용은 초기 각양 물종 및 點心米를 준비하고, 茶母를 정송하며, 方席 등을 마련토록 한 것, 이듬해 지방 監營에 時政記와 楮注紙를 상송토록

한 것, 그리고 그 해 연말 이후 戶曹와 兵曹에 부역인원의 料布를 지급토록 한 것들로 일의 진행과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3.2 來關

本廳에서 수취한 관은 모두 9건이 의궤에 등록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本廳의 來關목록

순서	일자	기관	내 용
1	병신 10/	全羅道 觀察使	楮注紙 200卷을 상송함
2	10/	忠淸道 觀察使	楮注紙 150卷을 상송함
3	11/	慶尙道 觀察使	楮注紙 250卷을 10월 시한을 넘김
4	12/	慶尙道 觀察使	楮注紙 250束 중 따로 올린 新寧縣 2束 외 248束을 상송함
5	무술 윤4/	禮曹	宣醮 시 할 일을 예에 따라 마련하고 거행할 일 각 해당 관사에 분부함
6	윤4/	禮曹	洗草 擇日을 윤4월 28일로 정함
7	윤4/	禁衛營	洗草 시 員役 등 供饋 布 5尺 수송함
8	윤4/	訓練都監	洗草 시 員役 등 供饋 錢 10兩 수송함
9	同日	御營廳	洗草 시 員役 등 供饋 錢 10兩 수송함

위 표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本廳에 관을 보낸 관아는 지방의 監營과 禮曹, 禁衛營, 訓練都監, 御營廳 등 소수이다. 지방 監營의 경우에는 할당된 楮注紙를 상송하는 일이 적혀 있으며, 禮曹와 禁衛營 등은 洗草의 擇日과 員役의 供饋에 드는 비용의 수송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항목은 哲宗實錄儀軌에서는 洗草 택일에 관한 禮曹의 關文은 禮關으로, 그리고 員役의 供饋는 儀軌廳의 來關에 따로 등록하였는바, 의궤의 편집체계에 따라 달리 분류되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來關은 앞의 移文과 연계해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本廳이 7월 慶尙監營으로 하여금 楮注紙 250卷을 10월말까지 올리도록 한 일이 있는데, 慶尙道만 일을 엉뚱하게 진행하여 10월에 주의를 주게 되었는데, 慶尙監營은 11월에 이르러서 시한 넘김을 사과하고, 12월이 되어 楮注紙를 상송한다는 문건을 보내기에 이른다. 이와 같이 移文과 來關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일의 진행사정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정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甘結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회신이 등록되어 있지 않아 비록 사소한 사안들이지만 전후 사정을 알 수 없다. 과연 甘結에 대한 회신이 본래 없었는지, 아니면 있었으나 권질이 호한해질 것을 염려하여 등록하지 않은 것인지는 현전 문서나 등록류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4. 廳房 및 別工作의 문건

4.1 各廳의 甘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궤에서 甘結이 차지하는 비중은 양적으로는 그 무엇보다 크다. 그러나 그 내용은 대부분 선행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필요한 물품을 진배받기 위한 것들이다. 따라서 논의의 편의상 刪節廳, 纂修廳, 校正廳, 校讐廳, 儀軌廳 등 各廳이 보낸 甘結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各廳의 甘結 내용

청별	건수	기간	주요 관아	주요 내용
산절청	52	1835. 6 - 1835. 11	戶曹, 兵曹	書吏, 計士 등 기송, 勿侵
찬수청	31	1835. 11 - 1836. 6	戶曹, 禮賓寺, 軍資監, 長興庫	膠末, 空石, 厚白紙 등 진배
교정청	96	1836. 7 - 1838. 2	戶曹, 禮賓寺	膠末 진배 24건
교수청	67	1838. 3 - 1838. 윤4	戶曹, 長興庫	厚白紙, 大節常墨 진배
의궤청	21	1838. 윤4 - 1838. 6	戶曹, 司瞻寺	洗草 人員 대령, 文書用紙 진배
계	267	1835. 6 - 1838. 6		

위의 목록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各廳이 발급한 甘結은 모두 267건이며, 대부분 물품의 진배와 인원의 동원에 관한 것이다. 다만 그 일의 진행사정에 따라 물품과 인원의 성격에서 다소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各廳별로는 가장 오랜 기간인 31개월간 운영되었던 校正廳의 문건이 96건으로 가장 많다. 다음은 校讐廳으로 67인데, 짧은 2개월간에 이루어졌음을 고려하면 그만큼 분주했을 것으로 이해된다.

단지 특별한 내용이라면, 典獄署에 笞杖刑板을 진배토록 한 刪節廳의 문건, 堂上이 쓸 奎章全韻 1건을 진배토록 한 纂修廳의 일, 鑄字를 添造하기 위해 小木匠 金景文 등을 기송토록 하고, 黃楊木을 卜定하게 한 校正廳의 일, 역시 訓練都監에 實錄入盛楨子 造成을 위해 金景文을 기송하게 하고, 實錄冊粧綴을 위해 穿穴匠 金景哲을 물침토록 한 校讐廳의 일, 그리고 戶曹와 工曹에 黃筆 30柄을 진배토록 한 儀軌廳 등의 일이 있는 정도이다. 그나마 各廳의 임무와 저간의 사정을 짐작하는데 도움이 될 만하다.

4.2 各房의 甘結 및 稟目

各房이 초기에 내린 甘結 및 稟目は 哲宗實錄儀軌에서의 예와 같이 各房 간에 그 차이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따라서 이를 일자별로 함께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各房의 문건 내용

순서	일자	기관	내용	각방		
				일	이	삼
1	을미 6/19 (稟目)		仕進 시 鋪陳 등 각 該司에 捧甘 取用	○	○	○
2	동일	各 該司	仕進 시 依幕 등 각 衙門 거행	○	○	○
3	동일	戶曹	茶母, 守直軍士 정송	○	-	-
4	동일	戶曹/別工作/工曹/唐沙器契	入盛楨子 등 진배	○	○	○
5	동일	工曹/繕工監/唐沙器契/常沙器契 外	黃筆 등 진배	○	○	○

순서	일자	기관	내용	각방		
				일	이	삼
6	동일	戶曹/長興庫/工曹/別工作/軍器寺	硯刀 등 진배	○	○	○
7	동일	戶曹/工曹 外	溫突 点火木 등 진배	○	○	○
8	동일	別工作 外	錐子 진배	○	○	○
9	동일	長興庫/司贍寺	楮注紙 등 진배	○	○	○
10	동일	長興庫	付籤白紙 진배	-	○	○
11	동일	戶曹/長興庫/義盈庫	厚白紙 등 진배	○	○	○
12	동일	禮賓寺	膠末 매일 진배	○	○	○
13	동일	別工作	書杖 진배	○	○	○
14	동일	繕工監/瓦署 外	尾簞 등 진배	○	○	○
15	동일	軍資監/廣興倉	居接處 網口空石 진배	○	-	-
16	동일	戶曹/長興庫/義盈庫	厚白紙 등 진배	○	○	○
17	무술 5/	長興庫/司贍寺	白紙 등 진배	○	○	○

위의 목록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各房이 보낸 문건의 17종으로 그 중 16종은 실록편찬의 초기인 1835년 6월 19일에 작성된 것이고, 마지막 1종만이 1838년 5월에 작성되었다. 그 사이 필요한 문건은 各廳에서 작성하였는지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1종에 불과한 稟目的 경우 수취기관이 생략되었는데 그것이 本廳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各房별로 甘結의 내용은 차이가 거의 없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一房에서만 없는 甘結이 1종이고, 二房과 三房에서 없는 甘結은 2종이다. 그리고 4종의 문건에서 各房 간에 수취기관의 차이가 있는데, 이는 세부적인 차이가 있어서 이다. 결과적으로 二房과 三房의 문건은 거의 일치하며, 단지 一房에서 특별히 다른 점이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4.3 別工作의 手本과 牒報

위계에 등록된 別工作의 문건은 手本과 牒報을 포함해 모두 39건이다. 다른 문건과 달리 처분을 ‘手決內’에 담고 있어 이를 건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別工作의 手本 및 牒報목록

순서	일자	유형	내용	처분
1	을미 윤6/	手本	監役 任翼常 분차	依
2	동월	牒報	楨子 등 실입 지급	依辛酉例 令分差計士 磨鍊
3	7/	"	補土 및 石橋 물력 실입	依
4	8/	"	木器皿 등 員數대로 조납	事勢似然 從員數 各一坐進拜 其餘各種 令分差計士 考例舉行
5	동월	"	遮面 조작하도록 물력 지급	分差計士 看審告課
6	9/	"	中楨子 물력 실입	前文書相考舉行
7	10/	"	茶母間 등 修補 물력 지급	依
8	병신2/	"	書板 조납하도록 물력 실입	前文書相考舉行
9	3/	"	廁間 修補 물력 실입	看審實入
10	9/	"	窓戶 紙地 등 물력 실입	看審實入
11	동월	"	樓上板門 물력 실입	看審實入
12	10/	"	窓戶 등 물력 실입	看審實入
13	11/	"	廳板 등 물력 실입	看審實入
14	동월	"	書案 硯匣 등 물력 실입	看審實入
15	정유1/	手本	監役 姜彝九 분차	依
16	3/	牒報	樓上庫 雙窓 등 물력 실입	看審實入
17	4/	"	廁間 蓋覆 물력 실입	看審實入
18	동월	"	粉板 등 물력 실입	考例實入
19	7/	"	廳板 修補 물력 실입	看審實入
20	동월	"	郎廳房 修補 물력 지급	看審實入
21	8/	"	書板 등 실입	考例實入
22	동월	"	長書案 등 물력 실입	前文書相考實入
23	9/	"	郎廳房 修補 물력 실입	看審實入
24	10/	"	窓戶 紙地 마련	看審實入
25	동월	"	소용 鐵弓里 등 수효 후록	依
26	동월	"	印出 各양 물종 조성 등	考例實入
27	동월	"	唱準 소용 大書案 등 지급	考例實入
28	동월	"	唱準 소용 大楨子 등 실입	看審實入
29	동월	"	印出假家 50間 등 물력 실입	實入
30	11/	"	印出 시 器皿 물력 실입	分差計士 考例實入
31	동월	"	印出 시 鍊匠 등 물력 실입	前文書相考實入
32	12/	手本	監役 李綱愚 분차	依
33	무술4/	牒報	鍊粧 修補 등 물력 마련	看審實入

순서	일자	유형	내용	처분
34	동월	"	書員 點心米 지급	三斗上下
35	윤4/	"	鍊粧, 器皿 실입	分差計士 考例實入
36	5/	"	實錄 入盛櫃 등 물력 실입	考例實入
37	동월	"	木櫬 修補 등 실입	看審實入
38	동월	"	白休紙 등 실입	依
39	동월	"	木鐵 器皿을 實入, 還下, 用還으로 구별하여 후록	依

의례에서 別工作의 문건은 各房이 올린 稟目的 경우와 같이 수취기관이 누락되어 있다. 다만 문건의 내용과 작성 시기를 고려하면 各廳 및 各房이 포함된 것만은 확실하다. 그리고 別工作의 문건은 실록편찬의 시작부터 종료시점까지 3년간에 걸쳐 작성 시기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된 경향이 있는데, 이는 실무적인 사안들을 일이 있을 때마다 검토하고 보고한 때문으로 해석된다.

哲宗實錄儀軌에서 別工作의 문건은 手本에 한정된 반면 여기서는 그것이 3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36건은 牒報이다. 상급관아에 보고하는 형식의 문서로 양자간에 큰 차이가 없겠으나, 다만 여기서 手本은 人事에 한정되어 있다. 牒報 가운데에는 印出에 필요한 假家를 50間 마련했다는 사실이 눈여겨 볼만하다. 무엇보다 純祖實錄儀軌에서 볼 수 있는 哲宗實錄儀軌와의 차이는 각 문건에 내려진 처분을 기입한 사실이다. 대부분 간단히 ‘依’, 또는 ‘看審實入’이나 ‘考例實入’ 등으로 적은 형식적인 투이지만 그 牒報나 手本の 결정을 헤아리는데 도움이 된다.

5. 結語

「純宗大王實錄儀軌」에 등록된 관문서는 실록편찬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기보다는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간접적인 일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 해당 의례에 나타난 관문서 등록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문서는 의궤 전체 지면의 절반을 차지하며, 여기에는 實錄廳의 本廳과 刪節廳, 纂修廳, 校正廳, 校讐廳, 一房, 二房, 三房, 別工作, 그리고 儀軌廳에서 발급한 이문, 甘結, 稟目, 牒報, 手本 등 문서 382건과 수취문서 來關 9건이 등록되어 있다. 발급문서를 중심으로 편찬한 것이라 하겠다.

둘째, 등록 관문서에 기입된 중앙 및 지방의 관아는 모두 60곳이며, 왕래문건의 관아별 연건수는 648건이다. 그 중 戶曹가 108건으로 가장 많고, 長興庫, 繕工監, 工曹의 순이다. 이들 4개 관아의 합은 270건이다. 주로 물자의 공급과 관련하여 전달된 것들이라 하겠다.

셋째, 관문서를 수취한 契와 廩은 모두 19곳이며, 기관별 연건수는 64건이다. 그 중 唐沙器契가 27건으로 가장 많고, 常沙器契, 炭契, 眞絲契, 其人 등의 순서이다. 상위 5개 기관의 합은 45건이다. 주로 일상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진배하던 곳이라 하겠다.

넷째, 本廳에서 발급한 移文은 모두 30건이 등록되었다. 3년간에 걸쳐 작성한 것들로 초기에는 戶曹에 각양 물종 및 點心米를 준비하고, 茶母를 정송하며, 방식 등을 마련토록 한 것이고, 이듬해는 지방 監營에 時政記와 楮注紙를 상송토록 한 것이며, 그 해 연말 이후는 戶曹와 兵曹에 부역인원의 料布를 지급토록 한 것이 위주이다.

다섯째, 本廳에서 수취한 관은 모두 9건이 등록되었다. 지방의 監營과 禮曹, 禁衛營, 訓練都監, 御營廳 등에서 보낸 것이다. 監營의 것은 각기 할당된 楮注紙를 상송한 일, 그리고 禮曹와 禁衛營 등의 것은 洗草의 택일과 원역의 供饋에 드는 비용의 수송에 관한 일에 관한 것들이다.

여섯째, 各廳이 발급한 甘結은 267건으로 대부분 인원의 동원과 물품의 진배에 관한 것이다. 그 중 31개월간 운영된 校正廳의 문건이 96건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校讐廳으로 67건이다. 후자의 경우 2개월 동안 발급된 사실을 고려하면 校讐廳의 일이 그만큼 분주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일곱째, 各房이 내린 甘結은 46건에 달하지만 各房 간에 그 차이가 미미하다. 따라서 중복성을 가려 이를 17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교적 一房보다는 二房과

三房 간의 중복성이 높다.

여덟째, 別工作이 올린 문건은 36건의 牒報와 3건의 手本이 일자순으로 등록되어 있다. 작성 시기는 실록편찬 초기부터 말기까지 3년에 걸친 것이다. 그 고른 분포는 일이 있을 때마다 실무적으로 검토된 때문이라 하겠다.

純祖實錄儀軌가 哲宗實錄儀軌과 다른 점은 各廳을 구분한 것, 日字를 기록하지 않은 것,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있다.

첫째, 391건에 달하는 등록 문건은 哲宗實錄儀軌의 193건에 비하면 배 이상 많다. 이는 특별히 各廳의 甘結과 別工作의 牒報에서 생겨난 차이이다.

둘째, 관아별로 문건의 왕래건수가 많은 곳은 戶曹를 비롯해 長興庫, 繕工監, 工曹의 순이다. 이는 哲宗實錄儀軌의 그것과 다름이 없다. 다만 다음 순위인 禮賓寺, 義盈庫, 濟用監, 兵曹, 司膳寺, 別工作 등의 순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특별히 인원의 동원과 관련한 문건의 수가 哲宗實錄儀軌에 비해 크게 적다.

셋째, 契와 塵에 발급한 문건의 수는 哲宗實錄儀軌의 경우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편찬기간이 더 길었던 만큼 시급을 요하는 일이 적었다고도 볼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 기관별 순위에 보이는 두드러진 차이는 같은 성격의 일에 같은 물자가 필요했을 것임을 고려하면, 그 공급처가 달랐던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넷째, 哲宗實錄儀軌에서는 洗草 택일에 관한 禮曹의 관문이 禮關으로, 그리고 원역의 供饋는 儀軌廳의 來關으로 따로 등록하였으나, 純祖實錄儀軌에서는 이를 한데 편성하였다.

다섯째, 別工作의 문건에 處分을 기입한 것은 특기할만한 사실이다. 대부분이 간단하게 상투적인 문구로 적혀 있으나 해당 사안의 결과를 알기에 충분하다.

<참고문헌>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史部 2). 서울: 서울대학교규장각, 1982.

『純宗大王實錄儀軌』.

『철종大王實錄廳儀軌』.

김상호. “철종대왕實錄廳의궤의 등록 관문서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49집
(2011. 9). 335-357.

尹仁洙. “朝鮮時代 甘結研究.” 碩士學位論文. 韓國學中央研究院 韓國學大學院.
2008.

崔承熙. 『韓國古文書研究』. 城南: 韓國精神文化研究, 1981.